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9,838,013	11,995,140
일반회계		386,275,505	11,588,265
특별회계		13,562,508	406,87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352,780	40,583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3,723,556	111,707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894,482	56,834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51,027	4,531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5,335	1,960
	드림빌특별회계	3,204,635	96,139
	주택사업특별회계	69,084	2,07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45,522	10,3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56,087	82,68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626,19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간주예산)